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오영탁 의원 등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
나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
(안 제2조)

다. 소방활동 보건 관리 및 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
라.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충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,
 - 감염관리실 설치·운영, 방화복 전용세탁기 비치, 심신안정실 설치,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·운영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·운영임.
 - 현재 감염관리실은 12개 소방서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, 안전센터 중 40m²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28개소에 설치 중임.
 - 방화복 전용세탁기는 공간부족으로 인한 안전센터 1개소를 제외하고 전 소방관서에 설치됨.
 - 심신안정실은 12개 소방서에 모두 설치되었으며, 안전센터 42개소 중 2개소는 설치되었고 8개소는 설치 중으로 나머지 32개 안전센터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아갈 계획임.
 -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은 소방청사 신축 시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3개 안전센터가 설치 계획임.

○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등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도내 전 소방서에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.

※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안 제2조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소방활동 보건 관리를 위한 사항과 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는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입법예고('19. 9. 24.~'19. 10. 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